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41 발의연월일: 2022. 8. 19.

발 의 자:양금희·배준영·서일준

성일종 • 안철수 • 노용호

윤창현 · 이주환 · 정희용

지성호 · 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임.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운영 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정 당시인 2008년의 로봇산업은 초기시장 형성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로봇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으로 급속한 성장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연구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특정 분야에서 신제품이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에 장애가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자 함. 더 나아가,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고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또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전인증 제도 실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 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 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 다.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현행 제20조부터 제2 9조의2까지 삭제).

- 라.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 마.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 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 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 누락되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3 신설).
- 사.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검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신설).
- 아.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안 제47조).
- 자. 자료제출·검사의 대상자(인증기관 등)에 대한 현행법 제49조를 보완함(안 제49조).
- 차. 2028년 6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 3. 「수출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안전인증 기준, 안전인증 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

하는 자는「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 여야 한다.

제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자료제출·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 전인증을 한 자
-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자
-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 5.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한 자

제47조에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4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5645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250분)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원격제어			
	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u><신 설></u>	제19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			
	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			
	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			
	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u>한다)</u>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u>따른 보험회사</u>			
	3. 「수출보험법」 제37조에 따			
	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제20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투자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회사로
 본다.

-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 다.
- ③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 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을 받는다.

④ 이 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자대상사업) 지능형 로 <삭 제> 봇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은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삭 제>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를 등록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존립<u>기간) ① 지능형 로봇</u> | <u><삭 제></u>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82조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등록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한 다. 다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는 지능형 로봇사업의 계속 등 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 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 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영업보고서의 제출) 지능 <삭 제> 형 로봇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5조(지능형 ____로봇투자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금융위원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지능형 로 봇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삭 제>

해당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 구할 수 있다.

- 1.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 2.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 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 및 일반 사무관리 회사
- 3.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부터자금을 지원받은 지능형 로봇기업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 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능형 로 봇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 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금 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 야 한다.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 <삭 제> 례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라 한다) 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 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투자자 와 이해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능형 로봇사업 에 관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의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 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와 자문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자문을 받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지능형 로 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보수 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투자위험보증사업) ① 산 | <삭 제> 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지능형 로봇투자 회사에게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 전을 수수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이 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 다.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투 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위험보증기관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 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① 지능 | <삭 제> 형 로봇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1.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지능형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에 대한 출자・주식 ·지분·수익권·대출채권 취 득
- 3.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한 투 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 주식 • 지분 • 수익 권 · 대출채권의 취득
- 4. 지능형 로봇 등의 개발・생 산・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의 지능형 로봇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능형 로봇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제1 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자 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1. 단기대출
- 2. 금융기관 예치
- 3. 국·공채의 매입
- ③ 그 밖에 지능형 로봇투자회 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9조(자금차입 등) 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 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 · 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 액의 합계는 지능형 로봇투자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조세 감면) 국가 및 지 | <삭 제> 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사업 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장의2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40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 로교통법 | 제2조제10호에 따 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 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

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 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 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 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 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 을 홍보할 수 있다.
-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안전인증 기준, 안전인증 절차

<신 설>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 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 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 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
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오
- 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 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신 설>

<신 설>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 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의4(보험 등 가입 의무) 안 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 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신 설>

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44조의2(자료제출·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 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 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 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

제47조(벌칙) ① 제28조제1항 및 제47조(벌칙) <삭 제>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 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 2.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 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 하고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 능형 로봇투자회사 등의 명칭 을 사용한 자
- 2. 제24조를 위반하여 영업보고 | <삭 제>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생략)

<신 설>

<신 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판매</u>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학	한 자		

5.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 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 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 증을 한 자

<u>(3)</u>		 	
<스	<u> </u>		

- 3. (현행과 같음)
-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④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 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